

2018 MEESo Workshop

# 연구윤리의 이해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을 중심으로

이 지 연(충신대학교, [jyyi@csu.ac.kr](mailto:jyyi@csu.ac.kr))

## 자료의 출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6).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서울: 진한엠엔비.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제8조]

-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제9조)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 연구부정행위: 주요 외국의 연구부정행위

미국: PUB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RESEARCH MISCONDUCT, 42 CFR PART 93

[HTTPS://ORI.HHS.GOV/SITES/DEFAULT/FILES/42\\_CFR\\_PARTS\\_50\\_AND\\_93\\_2005.PDF](https://ori.hhs.gov/sites/default/files/42_cfr_parts_50_and_93_2005.pdf) (검색일: 2017년12월29일)

영국: UK RESEARCH INTEGRITY OFFICE, UKRIO

[HTTP://WWW.UKRIO.ORG/PUBLICATIONS/CODE-OF-PRACTICE-FOR-RESEARCH/3-0-STANDARDS-FOR-ORGANISATIONS-AND-RESEARCHERS/3-16-MISCONDUCT-IN-RESEARCH/](http://www.ukrio.org/publications/code-of-practice-for-research/3-0-standards-for-organisations-and-researchers/3-16-misconduct-in-research/) (검색일: 2017년12월29일)

캐나다: TRI-AGENCY FRAMEWORK

[HTTP://WWW.RCR.ETHICS.GC.CA/ENG/POLICY-POLITIQUE/Framework-CADRE/](http://www.rcr.ethics.gc.ca/eng/policy-politique/framework-cadre/)

(검색일: 2017년12월29일)

호주: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HTTPS://WWW.NHMRC.GOV.AU/ FILES NHMRC/FILE/RESEARCH/RESEARCH-INTegrity/R39\\_AUSTRALIAN\\_CODE RESPONSIBLE CONDUCT RESEARCH\\_150811.PDF](https://www.nhmrc.gov.au/files/nhmrc/file/research/research-integrity/r39_australian_code_responsible_conduct_research_150811.pdf)

(검색일: 2017년12월29일)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2조]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2조]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표절 유형

- 내용 표절
- 아이디어 표절
- 번역 표절
- 2차문헌 표절
- 말바꿔쓰기 표절
- 논증 구조 표절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2조]

4. “부당한 저자 표시” 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영국 소재 출판윤리위원회(THE 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 제시하는 저자로서의 자격 조건

- 연구의 이해와 설계, 또는 데이터의 획득, 또는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에 실제적으로 기여한 경우
- 원고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지적 내용을 위해 이 초안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경우
- 출판 버전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부당한 저자 표시의 사례(COPE)

- 연구보조원이 저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목록에서 누락되었음.
- 연구 후원사가 연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여론 주도자를 저자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음.
- A가 비평글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A의 상관이 저자로 표기되었음. A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비평글의 최종 원고가 제출되었음.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올바른 저자 표시(COPE)

-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 저자로 인정받지 못한 연구 프로젝트의 기여자들 대상
- 이들이 무엇을 했는 지를 기술해야 함.

- 이의제기/항소(APPEALS)

원하지 않는 데에도 저자로 표시된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명에서 삭제해 줄 것을 해당 학술지 편집국에 요청 가능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올바른 저자 표시(COPE)

- 기여자의 역할과 지위(CONTRIBUTORSHIP)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S)
  - 교신 저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증명 등을 받는 사람이고 독자들 및 연구팀과 접촉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 일부 저자들은 이를 연구 책임자와 동일시 여기기도 함.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Q.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때, 지도교수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된다면 지도교수에게 어떤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 최소한 지도교수가 공동저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봄.
- 이에 대한 적절한 저자 표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지도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음.
- 지도교수 혼자 단독 저자로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속함.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2조]

5. “부당한 중복게재” 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이전 연구에서 발표·게재한 주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심화 또는 확대된 후속 연구를 할 때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 연구부정행위로서 중복게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후속 저작물에서 단순히 사용하기만 한 경우보다는, 중복게재로 인해 부당 이익을 보는 경우로 최소화함. 그 외의 사항은 7항에서 커버되도록 함.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학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중복게재의 사례들

사례 1.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사실을 밝힌 경우

사례 2. 자신의 학위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술지 또는 저서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

사례 3. 기존에 연구·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수합하여 인용·출처표시를 명확히 하고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사례 4. 이전 게재·출판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 잡이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판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사례 5. 자신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전문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출판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힌 경우

사례 6. 자신이나 타인의 연구 논문 등을 취합하여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서 등으로 출판하는 경우

사례 7.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판하면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실을 재게재한 논문이나 저서에 명확히 밝힌 경우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사례 8. 학술지에 짧은 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 표시를 하여 게재·출판한 경우

사례 9. 이미 게재·출판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편집되어 출처를 표시한 후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사례 10. 기존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 논문을 학교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재게재한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경우. 단, 교내학술지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2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